

동반성장,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해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1.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 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29일 정부와 대·중소기업계가 모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정상화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 진출을 막는 한편, 이런 기조가 유지되도록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하고 적용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회·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각종 규제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문화의 풍토를 바꾸려는 시도이다.

이후 반 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의 동반성장 로드맵에 따라 진행된 ‘법·제도 정비’와 ‘관행·인식 전환’의 두 실행 축은 크게 주목을 받았다.

■ 동반성장위원회 발족과 동반성장지수 마련

지난 2010년 12월 13일 정식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업종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CEO 각 9인, 학계·연구계 전문가 6인 등으로 구성되었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의지를 담은 동반성장 이행현장을 채택했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6개 대기업에 대한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을 지수화해 발표할 계획을 확정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기로 하고, 6대 산업군별로 매출액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전략’ 주요 내용

추진전략	정책과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확대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 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로 확산 : 동반성장투자액 세액공제(7%), 확산 인프라 구축 • 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협력 : 석유화학 가격예시제 실시, 철강재 안정적 확보지원 •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 경영·회계 투명성 강화, 상시적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 • 중소·중견 성장역량 강화 : 생산성·R&D·산업인력 등 핵심역량 확충 지원 • 인력·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 산업단지 환경 개선
추진·점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동반성장지수 공표 •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점검반」 구성

▼ 동반성장지수 측정의 기본구조

구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
대상	대기업	협력(1·2차) 및 수요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설문조사(정성)
주요 평가	1. 협약의 충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여부 · 지원내용의 규모·정도(금융, 대금지급,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1. 공정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경험(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2. 협약내용의 이행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 	2.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
	3. 하도급법 위반(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시 	3. 동반성장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추진체계 · 대기업의 1·2차협력사 연계지원체제
	4.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비리 등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업종 이양(가점), 진입·확장(감점)

▼ 건설부문 동반성장 지수 대상 대기업

산업군	평가대상 대기업
건설(12)	삼성물산(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건설부문), SK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협약 기준 개정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를 담당하게 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동반성장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에는 동반성장 협약 효과를 2차 협력사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가 2

차 협력사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과 그 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했고, 아이디어 무단 사용 등 기술자료 요구에 관한 위법 사례 및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례 등을 예시해 기술탈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효과를 2차 이하 협력사에 통보하는 '납품단가 조정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는 내용 등을 반영했다.

▼ 하도급 공정화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기술자료 요구행위의 위법한 사례와 정당한 사례 예시	-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기술자료·광고전략·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로 예시 * 다만, 예시된 것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에 해당 -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의 7가지 사례를 예시하여 대중소기업간 정당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일방적 사업장 출입 및 실사 금지	- 대기업을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등을 실시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 행위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원가내역 등 기술자료를 보호 * 다만, 건설위탁 시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하도급계약 추정제에서의 「계약 확인 요청서」 표준 서식 제정	- 구두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확인 요청서 표준 서식 제정
협동조합의 납품단가조정 지원기능 예시	-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지원기능을 예시하여 수급사업자가 단가 조정시 조정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부당경영간섭 적용 배제 규정 추가	- 동반성장 협약 효과를 2차 협력사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을 1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로 하여금 2차 협력사를 지원토록 하는 행위와 그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시

▼ 협약 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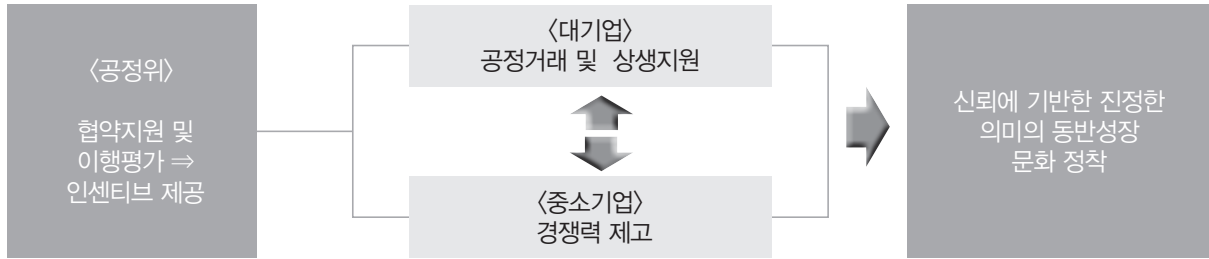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대기업을 1차 협력사에게 조정해 준 원재료의 기준단가를 내부 협력채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2차 이하 협력사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
구매담당 임원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동반성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위탁 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도입	- 대기업을 충분한 기간 전에 협력사에 위탁 예정사실 및 물량 등 위탁 관련 정보를 통보하여 생산 및 납품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함
원자재 직접공급 확대	- 대기업을 원자재를 저가에 일괄구매하여 협력사에 공급함으로써 협상력이 약한 협력사의 개별 구입부담을 덜어 원자재 수급 안정화 유도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확산	- 대기업을 매개로 하여 1차와 2·3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협약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함
기술보호 강화 및 서면 계약문화 정착	-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서면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공정화 지침 및 협약 등의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 및 부당경영간섭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을 1차 협력사를 통해 2차 협력사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동반성장효과가 하위 협력사까지 미치

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CEO 간담회를 비롯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간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대·중소기업·정부 삼각공조 모델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도입·운영 •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영 가이드라인 •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상생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수단(현금 등) 개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 자금(금융), 기술(개발), 교육·인력 등 지원
중소기업 (협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 공정·품질·물류개선 등 혁신활동 ◇ 2차 협력사 지원 등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절차,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 기준 제정 ◇ 협약내용 승인, 협약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실시 ◇ 협약이행 우수 대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 면제(1~2년) •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두레넷) 참여 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부여 • 공정거래위원장 등 표창

■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동반성장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동반성장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정협약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합의가 어려울 때는 바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감액을 하면 그 정당성을 대기업이 입증해야 하고 사전에 감액 사유·기준 등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고위·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대기업으로 전환했다.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권리 귀속·대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3월 11일 개정된 하도급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효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협의 신청권 부여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감액 원칙 금지. 감액 경우 대기업이 그 정당성을 입증토록 의무화 하도급대금 감액 경우 사유·기준 등 명시한 서면 교부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 요구시 권리 귀속·대가 등이 명시된 서면 교부 의무화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 기술 탈취 입증 책임을 대기업으로 전환
하도급법 적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크면 법 적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성장 협약의 법적 근거 마련 -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통제장치 도입(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의무)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및 단체 협의권’에 대한 마찰이 많았던 가운데, 여야의 합의로 전격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실손해 배상’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민법과 형평성이 어긋나고 소송 제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

으나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대기업의 기술 탈취 예방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도입이 확정됐고,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및 단체 협의권은 가격단합의 우려가 높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조정 신청권만 도입이 확정됐다.

■ 서울시, 가장 활발한 동반성장 정책 펴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가장 활발한 정책을 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7일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하도급 부조리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발주부서가 직접 민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한 엄중조치 및 부조리 원·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입찰 제한 등을 실행해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뽑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하도급 직불제·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점진·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 3대 정책과제 단계적 목표 이행률

3대 정책과제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하도급 직불제 실시	79%	85%	90%이상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74%	80%	90%이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3%	25%	50%이상

서울시는 2010년 79%인 직불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2011년에는 85%이상, 2012년 이후에는 직불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계약·부당특약 등 원·하도급 업체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해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해 종전 하도급 지위에 있었던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 지위로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는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3가지 정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서에 대금지불제 이행과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내용이 계약조건으로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 11월부터 시범 실시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복잡한 확인절차에 따른 시차가 발생하고 사후조치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

기 때문에 온라인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대금지급 확인이 훨씬 수월할 뿐 아니라 증빙서류 준비로 인한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보고 및 직권 직불처리 등 제반업무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 직불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동반성장지수'에 협력사간 결제수단 및 결제기간 통일성을 평가할 예정이어서 민간사업장에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방안

■ 삼성물산

삼성그룹은 지난 4월 13일 본사 사옥에서 '삼성그룹·협력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하고 1차 협력사 3,021개사 및 2차 협력사 2,187개사 등 총 5,208개사와 경쟁력 제고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① 금융지원책 강화

삼성물산은 협력사가 자금문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지원책을 보다 강화해 가고 있다. 현금결제 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건설업계 최대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가운데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를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 대기업의 유형별 중·소기업 지원 모델

<p>금융(자금) 지원</p>	<p>◇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대해 원자재구입비 등의 자금을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무상 또는 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 : 대기업이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대여 • 간접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중소 협력사에 대해 대출을 알선·중재(패밀리론 등) • 혼합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펀드를 조성, 금융기관을 통해 협력사에게 저리의 대출 지원 • 특별지원 :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의거 신용보증기관에 보증기금을 출연하여 대출 지원
<p>결제조건 개선</p>	<p>◇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수단(현금 등) 및 지급기일 단축 등의 개선목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수단 : (예) 현금(성) 결제비율을 35% → 70%로 확대 • 지급기일 : (예) 마감일로부터 60일째 지급 → 30일째 지급
<p>기술지원 및 보호</p>	<p>◇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 기술이전, 연구개발 등의 지원과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 : 기술이전, 연구개발지원, 특허권 제공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제, 공동특허출원 등
<p>교육훈련 및 인력지원</p>	<p>◇ 교육훈련 :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경영·원가절감·기술혁신·노무교육 등을 지원</p> <p>◇ 인력지원 : 대기업의 중견(기술)인력을 무상파견 지원 등</p>
<p>기타 상생협력 지원사항</p>	<p>◇ 협력사로부터 금품·향음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운용 등</p> <p>◇ 임원평가시 동반성장실적 반영, 위탁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운용, 협력사 원자재 확보, 선급금 지급, 마케팅 지원 등</p>
<p>2차 협력사 지원</p>	<p>◇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원하는 자금, 기술, 결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2차 협력사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방안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내용을 협력사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우수 협력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② 공동 기술개발

삼성물산은 초고층, 하이테크, 도로 및 교량, 항만 등을 비롯해 안전사고 다발관련 공중기술, 환경, 에너지효율 관련기술 등을 협력사와 함께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협력사가 필요한 기술과 공법, 재료, 도구 개선 및 신규개발 등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더불어 삼성물산이 보유한 207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무상개방해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07건의 지식재산권은 삼성물산이 최근 10년간 약 410억원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확

보한 것으로 삼성물산의 건설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건설업계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③ 공정한 하도급거래 이행

삼성물산은 하도급거래협약 내용에 구두발주가 금지되고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납품 단가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실시기로 했다. 하도급대금은 어음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현금성 자금으로 지급된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협약 이행 등 최근 2년간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증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건설사 및 협력사간 공동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경영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협약했다.

①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출연금 200억원과 은행 출연금 400억원으로 총 6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해 680여개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펀드는 협력사 가운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에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지원되며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1% 낮다.

② 대금지급기일 완화

현대건설은 또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매월 20일에서 13일로 7일 단축하고 현금지급 비율을 57%(지난해 말 50.6%)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단기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수 협력업체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 2회 무이자로 직접 대여해 주기로 했다.

③ 협력사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 지원

현대건설은 현대건설 인재개발원을 통해 인력관리부터 구매관련 실무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사들의 실무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및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0개 우수 협력업체에 5박6일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4개국 현장 시찰을 지원했으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600여개 협력업체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희망 협력업체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올해 말까지 운영) 중이다.

■ GS건설

GS건설은 지난 4월 14일 8개 공종 20개 협력사와 함께 '그레이트 파트너십 동반성장협의회'를 발족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경영 및 금융지원체제 강화 △공사수행력 강화 지원 △구조적 시공문화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소통강화를 통한 신뢰 증진 등을 약속했다. 또한 4월 15일에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0개 건설사 및 협력사간 공동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자금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경영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협약했다.

① 포럼 및 협의회 운영

GS건설은 매년 협력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하는 '자이 (Xi) 최고경영자(CEO) 포럼'을 열어 최신 기술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 첫 개최 이래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협력사 멘토링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협력사의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



고 있다. 또한 외부 유명강사의 초청강연 등을 통해 사고의 전환 지향 및 상호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자리로 정착됐다.

그레이트 파트너십 동반성장협의회는 주요 공중 20여개 협력사 CEO들과 보다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리로 올해 처음 시행됐으며, 이외에도 '협력회사 SUBCON BOARD'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대화 창구 마련,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②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정보 공유

시스템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TPMS' 'GS partner'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공사정보 및 기술공유, 건의사항 등 협력회사와 상

호 의사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합공사 관리시스템(TPMS : Total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전 협력회사로 확대 시행, 일일 작업관리를 가능하게 해 생산성 향상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현금결제 확대 등의 자금지원과 협력사와 경영혁신활동, 연구개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협력사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계약 및 하자이행 보증 면제 △협력회사 기술경진대회 실시 △상호신기술 개발 및 공동 참여 △협력사 현장소장 교육 △협력회사 안전혁신학교 교육 △녹색경영 확산 지원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12일 ‘대우건설 협력회사 금융지원 협약식’을 갖고 총 4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며, 4월 15일에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0개 건설사 및 협력사간 공동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자금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경영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협약했다.

①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우건설은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대우건설의 자체출연금 100억원과 우리은행의 출연금 300억 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게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 100% 유지 및 기술개발비, 선급금 지원 등도 펼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중소협력사에 제공한 지원 효과가 2,917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51개 협력사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 2,876억원의 효과를 유발했고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4억8,000만원을 직접 지원했다. 또 환율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협력사에서 발생한 11억3,000만원의 비용부담을 덜어줬고 업계 최초로 임원들이 직접 26개의 협력업체에 방문해 경영자문을 했다.

② 협력사와 해외 동반진출 확대

대우건설은 협력사와 외국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국외 진출 경험이 없는 초창기 해

외진출 협력사와 외국 시장에 동반 진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확립, 협력사 지원 확대, 상호 유기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구체적으로 해외 현지 문화나 시공 방법, 입국 문제 등에 대한 협력사의 교육뿐 아니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1월,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동반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약속했고, 지난 3월 23일 그룹 차원에서 협약식을 체결해 핵심기술 보유현황, 성장목표 등의 기준에 따라 해마다 심사를 거쳐 2015년까지 10개, 2020년까지 30개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① 협력사 역량 증진 프로그램

포스코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역량 증진, 해외판로 지원,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현안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업주치의 제도 운영 △보유 특허기술 이전 △공동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테크노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체 보유중인 교육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협력사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도 운영 중이다.

② 100% 현금결제 및 금융지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0월 4일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거래대금 100% 현금 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협력사 거래대금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현금결제하던 종전 규정을 폐지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어음이 아닌,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③ 2차 이하 협력사도 지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8월, 27개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해 하도급 대금 지급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올해는 34개 협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건설 동반성장지원단을 통해 1·2차 협력업체 중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법률, 세무, 인사노무 등 전문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원 역시 2차 이하 협력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해 8월 '포스코패밀리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통해 1차 협력사를 위해 조성한 7,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펀드 대출을 2~4차 협력사들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하기로 계약한 협력사가 중도금(계약금의 30%)만 내면 설비를 쓸 수 있도록 했고 협력사와 R&D·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해 협력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 비용절감 활동에서 나온 이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관계 형성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

도급거래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부문에서 2년 연속으로 A등급(우수)을 받았다.

■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지난 3월 24일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57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하고 계약 이행보증 면제, 입찰초청시 우선권 등을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4월 10일 2011년 플랜트 사업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해 대림산업의 2011년 경영계획 및 윤리경영 등을 공유했고, 4월 15일에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0개 건설사 및 협력사간 공동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자금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경영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협약했다.

① 협력사 자생력 강화 위한 재무지원

대림산업은 협력사에 대한 직접적인 재무지원이 업계 최고수준이라 밝히고 있다.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현금결제 비율을 85%까지 끌어 올렸다.

또 지난해 단기운용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무보증·무이자로 1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어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자금지원을 돕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대림산업은 직접 비용을 부담해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협력사에 제공해 오고 있다.

이밖에도 2006년부터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기

성대금이 2차 협력업체에 지급되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역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② 기술적·인적 노하우 공유로 협력사 개발 지원

대림산업은 기술적, 인적 노하우를 협력사와 공유하며 공동으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진공 복층유리, 바닥충격음 차단시스템 기술을 비롯한 11건의 기술을 공동 개발했고, 특허·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사와 우선 계약을 체결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협력사와 설계, 디자인 단계부터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D&P(Design & Procurement)제도’를 운영중이다. 이 제도로 협력사는 원가절감과 기술 및 공법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또 협력사가 해외 발주처의 리스트에 등록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해외공사에 동반 진출해 협력사의 플랜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 SK건설

SK건설은 지난 1월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51개 협력사와 함께 토목, 건축, 기전, 플랜트 등 4개 분과로 활동하며 현장 품질안전 관련 프로그램과 분과 간담회, 정기총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SK건설의 협력업체와 관련된 행사는 모두 행복날개협의회의 운영일정과 연계할 방침이다. 또 4월 15일에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0개 건설사 및 협력사간 공동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자금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경영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협약했다.

① 협력사 대출 지원 위한 금융제도

SK건설은 SC제일은행과 함께 협력사의 대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론’을 실시하고 있다. SK건설은 협력사가 매출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발주서를 통해 SC제일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받는 기성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SK건설은 또 금융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 교육훈련 등 기존에 실시해 왔던 5대 지원과제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협력업체협의회 구성·운영, 우수 협력업체 계약이행 보증증권 면제 등 13개 사항도 추진하고 있다.

② 협력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SK는 그룹 공통으로 협력사를 위한 ‘상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생교육을 통해 협력사의 기술과 품질을 개선하고, 자사의 경쟁력도 높이는 선순환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목표다. SK는 협력회사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차원의 ‘행복 동반자’ 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온·오프라인 협력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5만명 이상의 협력사 직원에게 교육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지난 1월 우수 협력사 간담회 및 4월 7일 김포 스카이파크 조성공사, 협력사 동반성장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동반성장 간담회 및 자금지원, 기술제휴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또 4월 19일 그룹 공통으로 2,624개 1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 15일에도 10개 건설사 및 협력사간 공동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자금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경영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협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관심을 받고 있다.

① 동반성장사무국 신설, 5대 실천과제 발표

롯데건설은 지난해 11월 박창규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반성장 추진 사무국을 신설해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실천 사항으로 협력사 경영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을 확대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협력사의 교육·인력 지원과 기술·역량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 및 경영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 경영진단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으며 재무분야 컨설팅을 통해 원가율 개선과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현금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투명 경영’

롯데건설은 조달 업무의 온라인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조리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웹을 기반으로 한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입찰, 계약, 정산, 각종 보증서 제출, 제증명 발급 등 ‘건설조달 프로세스’를 철저히 온라인화 했다.

회사가 운영 중인 ‘윤리경영 홈페이지’ 또한 직원들의 윤리의식 확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인 ‘윤리 사무국’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한화건설

한화건설은 지난 3월 30일 인천청라 꿈에그린 현장에서 협력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4월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0개 건설사 및 협력사간 공동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자금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경영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협약했다. 또 4월 22일에는 2011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사의 역량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① 체계적 시스템 통한 협력사 의견 수렴 및 해결

한화건설은 매년 우수협력사 간담회와 기술교류회를 개최해 각종 애로사항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가장 필요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화건설 기술연구소 주관으로 6개 프로젝트에 기술개발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

해 특허 및 신기술에 대한 공동 소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급저가심의제'를 도입해 협력사의 최소 이윤을 보장, 수익성 개선 및 품질저하를 막고 있다.

② 경영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조성

한화건설은 계열사들과 함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기존금리에서 할인된 금리를 적용 받고, '네트워크론'을 통해 협력사가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개인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현금결제 비율도 점차 상향 조정된다. 1억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는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기일을 기존 27일에서 24일로 앞당겨 협력사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두산건설

두산건설은 지난 4월 6일 공정거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해 1·2차 협력사간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4월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0개 건설사 및 협력사간 공동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자금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경영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협약했다.

① 국내 건설업계 최초 협력사 CP 도입

두산건설이 제시한 협력사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제도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해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시 조기에 발견해 조치하는 기업 내부의 준법 시스템이다.

두산건설은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1차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도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CP도입 협력사에 대해 관련 법규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해 준법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력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협력사 정기등록 평가시 가점부여 등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② 선순환적 파트너십

두산은 그룹 차원에서 '선순환적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춰 협력사들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두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두산 그룹은 분기마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공장을 신·증설할 시 핵심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두산 그룹은 협력사 교육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품질관리, 기계가공, 용접기술 등 9개 분야 24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공정개선과 품질개선을 위해 산업품질 명장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 동부건설

동부건설은 지난해 12월 150개 협력사들과 '상

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선포식’을 열고 TCP(삼각공조프로그램) 협약을 맺었으며, 4월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0개 건설사 및 협력사간 공동『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자금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경영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협약했다.

① 신개념 상생 협력방안, 삼각공조프로그램

동부건설은 150개 협력사들과의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며 TCP를 맺었다. TCP(Triangle Cooperation Program)란 대·중소기업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협약이행 우수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상생 협력방안을 말한다.

동부건설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사에 5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현금결제비율을 35%에서 45%로 확대키로 했다. 대금지급 기일도 60일째 지급에서 45일째 지급으로 단축하고 발주처의 기성지급이 없어도 월 1회 목적물 수령후 15일내 현금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품질·기술 개발, 교육훈련 지원,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용, 발주자의 선급금 미지급시에도 계약금액의 30%를 선급금 지급, 전자입찰비율을 현 4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0개 건설사 및 협력사간 공동『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자금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경영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협약했다.

① 협력사 재무 건전성 확보

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총 2차례에 걸쳐 35개 우수 협력사에 105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했다. 또 우리은행과 함께 총 12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 협력사들의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상생협력 펀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투자비용이 절실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순수 현금결제비율을 높였으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비롯한 현금성결제비율 역시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② 그린 파트너십 실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협력사와 함께 ‘그린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특허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협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 및 품질개선 교육을 실시, 협력사들의 인재육성과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들과 함께 참여하는 안전품질위원회를 구성해 건설현장의 품질 개선과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